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골재채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현미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골재 선별·세척 또는 파쇄 신고 생산기간 폐지 등의 내용으로 「골재채취법」이 개정(법률 제 16627호, 2019.11.26. 공포, 2020. 5. 27. 시행)됨에 따라 세무 규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시기, 협회 위탁업무 등 제도 운영 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한국수자원공사”를 “제4조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5조의2제1항 전단 중 “매년 3월 31일까지 골재채취”를 “골재채취”로 한다.

제3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3항) 제1호 중 “총 생산량 또는 생산기간”을 “연간 생산량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골재 선별·세척 등의 신고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0일을 말한다.

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를 각각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5까지로 하고, 제33조의2 및 제3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의2(골재 사용자) 법 제32조의2 본문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건조시멘트모르타르제조업자를 말한다.

제36조의5(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골재 활용)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”란 골재채취를 위해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 또는 신고 절차 등을

모두 이행한 경우를 말한다.

제38조의2제1항 중 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”를 “협회”로 한다.

제40조제4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골재의 품질조사

4.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골재 선별·세척 등의 신고 내용 이행 여부
확인서의 접수

별표 1의 모든 “굴삭기”를 “굴착기”로 하고, 같은 표 비고 제2호사목을
아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선별기에는 살수설비 및 동력설비가 포함되어야 한다.

별표 1의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등록기준 에 관한 사항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 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	법 제19조 제1항제2호	영업 정지 6개월	등록 취소		
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	--

별표 1의2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파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 니한 경우	법 제19조 제1항제11의 2호				
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	--	--

1)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		등록 취소			
2) 신고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		경고	영업 정지 2개월	등록 취소	

별표 1의2 제2호파목 및 하목을 각각 하목 및 거목으로 한다.

별표 1의4 제1호다목1) 및 2)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제8호”를 “제6호”로 한다.

별표 3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 제1항제4호	50만원	150만원	500만원
--	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	-------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)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<u>한국 수자원공사</u> 에 골재자원정보관 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	제5조(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) ----- ----- 제4 조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(이 하 “협회”라 한다)----- ----- -----.
제25조의2(골재채취예정지의 지 정) ①시·도지사는 법 제21조 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또는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 의 신청을 받아 <u>매년 3월 31일</u> <u>까지 골재채취</u> 가 필요한 일정지 역을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하 여야 한다. 이 경우 「하천법」 에 의한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 리구역을 골재채취예정지로 지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 할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홍수통 제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	제25조의2(골재채취예정지의 지 정) ①----- ----- ----- ----- 골재채취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33조(골재의 선별·세척 등의 신고 등) ① 삭 제	제33조(골재의 선별·세척 등의 신고 등)

② (생략)

<신설>

③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골재의 총 생산량 또는 생산 기간

2. 3. (생략)

<신설>

제33조의2 ~ 제33조의4 (생략)

<신설>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골재 선별·세척 등의 신고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0일을 말한다.

④ -----

-----.

1. ----- 연간 생산량

2. 3. (현행과 같음)

제33조의2(골재 사용자) 법 제32조의2 본문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건조시멘트모르타르제조업자를 말한다.

제33조의3 ~ 제33조의5 (현행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와 같음)

제36조의5(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골재 활용)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”란 골재채취를 위

제38조의2(공제사업의 허가 등) ① <u>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</u>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허가신청서에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제40조(업무의 위탁 등) ① ~ ③ (생략) ④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 1. ~ 2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⑤ (생략)	<u>해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 또는 신고 절차 등을 모두 이행한 경우를 말한다.</u> 제38조의2(공제사업의 허가 등) ① <u>협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제40조(업무의 위탁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----- ----- ----- --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u>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골재의 품질조사</u> 4. <u>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골재 선별·세척 등의 신고 내용 이행 여부 확인서의 접수</u> ⑤ (현행과 같음)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546